

검 토 보 고 서

의 변	안 호	제44호
--------	--------	------

2018. 7. 26.

건 명	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공공시설사업소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7. 12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7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부 항목을 폐지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○기존 체육시설(족구장,테니스장,농구장,체력단련장,탁구장) 중 탁구장 시설만 유료화 되어 탁구장 이용객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 민원과 탁구장 운영에 따른 비용(기간제근로자 인건비)이 손익계산상 많은 적자가 대두되어 탁구장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탁구장 관련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
가. (별표3) 탁구장 사용료(제8조제1항 관련)규정을 삭제함

탁구장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명	기준	기본료	비 고
탁구장	1명 1시간	1,000	-초과 30분당 500원 가산 -선착순 배정 -입장(사용) 제한 ▶보호자 동행 없는 10세 미만 자 ▶운동시설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자 -개관 :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09:00 ~ 22:00 -휴관 : - 매년1월1일. - 매주월요일. - 설,추석,연휴기간.

□ 검토내용

- 기존 체육시설과 같이 탁구장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